

대구지방법원 2021. 5. 7 선고 2020가단1388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5. 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, D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제6342호로 공탁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2017. 10. 23.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 단

갑제1호증 내지 6호증(가지번호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, 원고가 소외 C,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 226262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14,5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(이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)을 가진 사실, 위 C, D이 2017. 10. 23.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제6342호 강제집행정지보증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채권(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회수채권이라 한다)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한 사실, 이 사건 공탁금출급회수채권의 양도 당시 C, D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.

한편, 이 사건 공탁금 출급회수채권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등의 변제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였으리라는 사실은 법률상 추정된다. 따라서 피고와 D, C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회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피고는 사해의사나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C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출급회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C, D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화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의 신분관계

가. 원고는 소외 C,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 226262 임금 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.[갑 제1호증 이행권고결정 참조]

나. 소외 C과 D은 원고에 대한 채불 사업주로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 226262 임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금 14,500,000원을 공탁(2017년 금 제6342호)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입니다.[갑 제2호증 금전 공탁서 참조]

다. 피고는 소외 C, D으로부터 위 나항의 14,500,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(이하 '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'이라 함)을 2017. 10. 23.자로 양수한 자입니다.[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참조]

2.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

원고는 2020. 7. 14.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금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고, 그 후 2020. 8. 6. 대구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(2020. 7. 14. 접수)의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비로소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준수하였습니다.

3. 사해행위의 성립

가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는 소외 C,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 226262 임금 사건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의 1항에 따라 C과 D으로부터 금 14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습니다.[갑 제1호증]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(1). 소외 C, D이 피고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7. 10. 23. 당시 소외 C과 D의 적극재산으로 D의 전세금 50,000,000원이 있으나[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],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[갑 제5호증 사유신고서,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채권압류통지 각 참조]

- 아래 -

채무자	채권자	채무액
D	수 성 세 무	284,643,160
	서	원
D	대 구 수 성	본세 3,610,590
	구	원
C	대 구 수 성	본세 5,013,210
	구	원
C	남 대 구 세	503,413,240
	무서	원
C,D	A	14,500,000

	원
합계	811,180,200
	원

이상과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함에 따라 무자력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바,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.

(2). 또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(소외 C, D)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.

4. 결어

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,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